

공 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15. 8. 26.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영화동 37-462번지
3. 도로길이 : 3.7 m
4. 도 로 폭 : 1.2 m
5. 도로면적 : 4 m²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7-27번지 상의 사용승인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영화동	37-462	도	4	4	0	박○○	
합 계			4	4	0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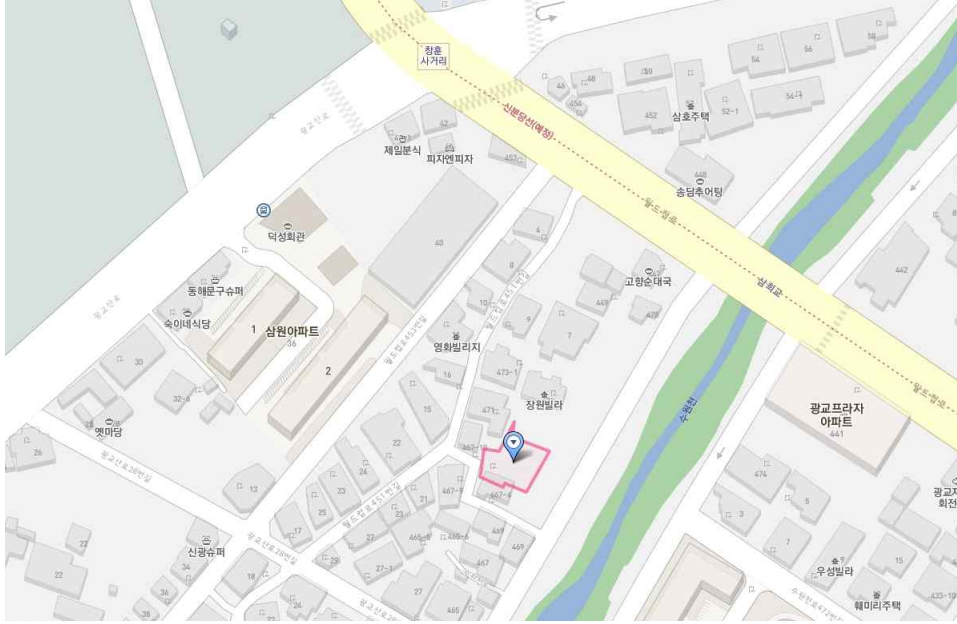
9. 공고기간 : 2015. 8. 26. ~ 2015. 9. 14.(20일간)
10. 공고방법 :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11. 기타사항

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/성명	시설8급 이선영	전화번호	031-228-5458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<임의>